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3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1.

발 의 자:진종오·서천호·조경태

정성국 · 김형동 · 우재준

정동만 • 박정하 • 신동욱

한지아 • 박충권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,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. 또한,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 및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, 현실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, 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

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요구 하는 절차로 절차 지연 및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고, 중·경징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 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,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줄 수 있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감사, 권고,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9)

또한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며,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체육계 현장의 인권보호라는 사업의 취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,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조사기록등을 수사기관·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, 제18조의3

제3항제4호, 제18조의4제3항, 제18조의10제3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제4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)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(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8조의3제3항제4호 중 "인권감시관"을 "인권보호관"으로 한다. 제18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의9의 제목 "(고발 및 징계요구)"를 "(고발 및 징계요구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"을 "자에

대한 징계요구, 권고, 시정명령 등(이하 "조치요구"라 한다)을 할"로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요구를"을 각각 "조치요구를"로 하고, 같은 항단서 중 "징계 요구"를 "조치요구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징계요구"를 "조치요구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 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.

- ④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 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.
- 1. 선수에 대한 징계
  - 가. 중징계: 제명, 자격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, 출 전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
  - 나. 경징계: 견책
- 2.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징계
  - 가. 중징계: 제명, 해임, 자격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, 출전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
  - 나. 경징계 : 감봉, 견책
- 3. 심판에 대한 징계
  - 가. 중징계: 제명, 해임, 강등, 자격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 정한다), 출전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

나. 경징계: 감봉, 견책

4.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제명, 해임, 자격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

나. 경징계 : 감봉, 견책

5. 체육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파면, 해임, 정직

나. 경징계: 감봉, 견책

6.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 : 출전정지
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,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평가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주관하는 기관 등의 장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의10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	제18조의2(선수 등 체육인 보호
시책의 마런 등) ①・② (생	시책의 마런 등) ①·② (현행
략)	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
	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하여
	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
	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
	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
	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
	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
	<u>다.</u>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(제4항
	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을 포함
	한다)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
	•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
	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
	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및 체
	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. 이
	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
	사유(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
	유는 제외한다)가 없으면 요청
	에 따라야 한다.
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

- 립) ①・② (생략)
-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·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<u>인권감시관</u> 운영
- 5. ~ 7. (생략)
- ④ ~ ⑧ (생 략)
- 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 저 포츠비리의 신고) ①·② (생략)
  -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 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 <u><단서</u> 신설>
- 제18조의9<u>(고발 및 징계요구)</u> ① 저 (생 략)
 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 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<u>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</u> 수 있

립) ①・② (현행	과 같음)
③	
1. ~ 3. (현행과	같음)
4	
<u></u>	권보호관
5. ~ 7. (현행과	같음)
④ ~ ⑧ (현행괴	· 같음)
세18조의4(체육계 역	민권침해 및 스
포츠비리의 신고)	①·② (현행
과 같음)	
③	
	· <u> </u>
신고자가 동의한	때에는 그러하
<u>지 아니하다.</u>	기 레 스 ㄱ _ ㄷ )
제18조의9 <u>(고발 및</u>	
① (현행과 같음)	
②	
자에 대한 징계요	
1 1 1 6 6 1 32	,,, , 0

다. 이 경우 <u>요구를</u>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<u>요구를</u>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<u>징계 요구</u>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있다.
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<u>징계요구</u>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u><단서</u> 신설>

<신 설>

명령 등(이하 "조치요구"라 한
<u>다)을 할</u> <u>조치요구를</u> -
, <u>조치요구를</u>
<u>조치</u>
요구
③
<u>조치요구</u>
الما الما
<u>다만,</u>
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
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
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
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.
④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
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, 문화체
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
징계 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

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1. 선수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제명, 자격정지(1 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 한다), 출전정지(10년 이하 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

나. 경징계: 견책

2.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제명, 해임, 자격
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
로 한정한다), 출전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)

나. 경징계 : 감봉, 견책

3. 심판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제명, 해임, 강등,
자격정지(10년 이하의 기
간으로 한정한다), 출전정
지(10년 이하의 기간으로
한정한다)

나. 경징계 : 감봉, 견책

4.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가. 중징계: 제명, 해임, 자격정지(10년 이하의 기간으

<신 설>

#### <신 설>

- 제18조의10(신고 · 상담 및 임시보 제18조의10(신고 · 상담 및 임시보 호 시설의 설치 등) ①・② (생 략)
  -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· 상담 업무

로 한정한다)

나. 경징계 : 감봉, 견책

5. 체육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: 파면, 해임, 정직

나. 경징계 : 감봉, 견책

- 6.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 : 출 전정지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 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.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평가 또는 보조금 의 지급 등을 주관하는 기관 등 의 장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요 구할 수 있다.
-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요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호 시설의 설치 등) ①・② (현 행과 같음)

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	
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	
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	
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</u> 신고자등이 동의한
	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